

공정과 정의

— 성경과 철학의 비교 —

김재승*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성경의 정의와 철학 등에서 정의와의 관계 |
| II. 철학에서 공정과 정의 | V. 요약 및 결론 |
| III. 성경상의 공의와 정의 | |

국문초록

본고는 공정이나 정의와 관련하여 일반 학문 분야와 성경상의 공정과 정의를 비교·분석하였다. 본고의 연구 목적은 이 분야에서 그동안의 연구물을 정리·비교하여, 정의나 공정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 (전문 연구자가 아닌)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본고에서는 정의, 공정, 공의 등의 용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법철학과 정치철학, 그리고 성경상의 내용을 분석·정리하였다. 그 결과로 이들 용어는 정의 하나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결론으로 본고에서는 정의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다음으로 철학에서의 정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정의의 관점에 따른 정의 개념을 정리하고, 대표적인 정의의 분류를 소개하였으며, 아리스토텔레스와 존 롤스의 정의론을 정리·소개하였다.

이어서 성경에서의 정의를 분석·검토하였다. 구약성경의 정의와 관련된 두 원어 미쉬파트와 체다카의 쓰임을 분석하여 성경에서 정의 개념을 분석·정리하였다. 신약성경은 정의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의에 해당하는 원어는 사용하고 있어, 원어를 소개하고 그 내용상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성경상의 정의가 성경에 구체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광주중흥교회 협동목사
논문접수일 : 2022. 5. 26. 논문심사일 : 2022. 6. 03. 게재확정일 : 2022. 6. 14.

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응보적 정의, 배분적 정의,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성경상의 정의는 응보적 정의에 기초하고 있으나 배분적 정의도 중요시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표는 회복적 정의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성경상의 정의와 철학 분야 등에서의 정의를 비교·분석하였다. 성경상의 정의와 철학상 정의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성경의 정의는 신의 명령으로부터 기원한 것이고, 철학상의 정의는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그 실천면에 있어서는 완전자유주의의 정의론을 제외한 정의는 성경의 정의와 조화할 수 있다. 특히 분배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는 성경의 정의와 많은 부분 조화점을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공정, 정의, 공의, 미쉬파트, 체다카, 분배적 정의, 롤스

I. 문제의 제기

공정이 사회의 이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고 한다. 그럼 공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공정의 개념은 전통적인 정의나 평등의 개념과 다른 것인가?

전임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현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기치를 들고 대통령이 되었다. 한편, 성경은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라’고 선언하고 있다.

본고는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공정이나 정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물론 본고가 이에 대한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이 문제를 정리해 보고자 한 것이다.

본고는 먼저 철학 및 기타 관련분야에서 공정이나 정의를 어떻게 규명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정의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과 현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정의론자인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을 정리·소개할 것이다. 정의와 관련이 있는 헌법상 평등권의 내용도 간략히 정리할 것이다.

다음으로 신구약 성경에서의 정의를 분석·소개할 것이다. 성경은 정의 자체를 정의(定義)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의와 관련된 원어 용어들이 여럿 있으므로, 이들 원어의 의미를 분석하여 성경상 정의의 의미를 정리할 것이다.

위 논의 전개 전에 각 장에서 먼저 유사한 용어의 개념에 대해 정리를 할 것이다. ‘공의’ ‘정의’ ‘공정’ ‘평등’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서로 구별하여 쓰는 것인가, 실제로 구별하여 쓰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비교·분석하여 결론을 맺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경상의 정의와 철학 및 기타 분야에서의 정의 개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범위 등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본고는 정치철학이나 법철학 혹은 성경상의 정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논문이 아니다. 본고의 필자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자가 아니다. 그러함에도 본고를 준비한 것은 정의 및 그와 관련된 개념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철학 등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여, 이 분야 전문학자가 아닌 일반 독자들- 특히 성경적 정의에 관해 관심 있는- 에게 현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의나 공의 등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또한 본고의 한계이기도 하다.

II. 철학에서 공정과 정의

정의의 개념은 정치철학이나 법철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이다. II. 장에서는 이들 영역 및 관련분야에서 정의의 개념을 개관한 후 정의론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현대 철학자 존 롤스의 정의론을 정리·소개할 것이다. 우선 공정과 정의 및 평등의 관계가 하나의 정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다음, 정의가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된 논의를 정리할 것이다.

1. 용어의 정리

우선 정의, 공정, 평등이 구별되는 용어인지 살펴보자. 정의(正義)의 사전적 정의(定義)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라고 하거나,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고려대 한국어대사전)라고 한다. 공정(公正)을 ‘공평하고 올바름’이라고 하면서 유의어로 공평, 균등, 정의를 예시하고 있다(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또 다른 곳은 공정을 ‘공평하고 올바름’이라고 정의한다(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이렇듯 정의와 공정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로는 구별하기 힘들다. 공정은 주로

분배와 관련된 올바름을, 정의는 분배보다 좀 더 포괄적인 올바름을 지칭한다고 하나, 현실에서는 두 용어를 혼용한다. 공평이나 평등이라는 용어도 정의나 공정과 구별하기 힘들다. 이들 용어는 정의의 한 면이거나 정의 자체일 수 있다. 결국 정의, 평등, 공정, 공평은 넓은 의미의 ‘정의 개념’에 속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서 살펴볼 정의 개념도 모두 부분적인 것으로, 포괄적인 일의적(一義的) 정의 개념은 아직 나온 것이 없고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정의라는 개념 자체가 그 시대,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것으로 일률적일 수 없고, 정의에 관한 특정 정의(定義)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개략적으로 오늘날 정의는 평등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며, 헌법상 평등원칙에 정의 개념이 구현되어 있고, 평등권의 실현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본다.¹⁾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라는 문구에서, 기회가 평등한 것=정의, 과정이 공정한 것= (절차적) 정의, 결과가 정의로운 것= (분배적) 정의로 각각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 문구는 길게 풀어 썼지만, 축약하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에 다 포섭될 수 있는 표현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기치도 ‘공정한 사회’가 무엇인지가 명확지는 않지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표현과 다르지 않다. 다만, ‘자유’와 ‘실력’을 강조하고 있는 현 대통령의 입장을 헤아려 보면, 그가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에서는, 기회의 평등이 강조되고 그 결과 능력주의가 중요시되는 그러한 사회일 것이다. 결국, 전임 대통령이나 현 대통령이나 모두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정의’의 포섭범위는 다를 것이다.²⁾

2.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 및 정의의 분류

1) 정의를 보는 관점

(1) 정치철학

철학적 관점에서 정의란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정의에 대한 관점은 대략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자유적 평등주의(사회계약론적 평등), 공동체주의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김도균, 『한국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아카넷, 2021, 11-14쪽.

2) 과거 제5공화국(전두환 대통령) 출범 모토도 ‘정의 사회 구현’ 이었다.

(i)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에서 시작되었다. 공리주의는 행복 또는 쾌락이라는 단일 가치를 양적으로 측정하여, 그 총량의 극대화 즉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한다.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정의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관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오늘날 보편적인 정의관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³⁾

(ii) 자유지상주의

자유지상주의(liberalianism)는 ‘개인의 개인에 대한 완전한 소유’를 주장한다. 그렇기에 개인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는 무한정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장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이나 복지정책을 일체 배격한다. 자유지상주의 입장에 따르면, 자유와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다.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 보면, 기회가 공정하다면 어떠한 불공정한 결과도 정의 관념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소위 분배적 정의 관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능력주의를 지지한다.⁴⁾ 자유지상주의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이다. 그는 강제, 사기, 절도 등에 대한 보호 같은 좁은 기능에 한정된 최소한의 국가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직에게 정의란 공정한 교환을 의미하는데, 출발점과 교환 자체가 공정하기만 한다면, 자유로운 선택과 교환에서 나오는 모든 재화의 분배는 정의로운 것이다.⁵⁾

(iii) 자유적 평등주의(사회계약론)

자유적 평등주의 혹은 사회계약론적 정의는 정의를 당사자 간 합의에서 찾고 그 합의 절차의 공정을 중시하는 사상으로 존 롤스(John Rawls)가 대표적인 학자이다. 롤스는 사회계약론의 전통에 따라 공적 가치의 분배라는 사회정의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롤스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을 계약당사자로 전체

3) 오늘날 공리주의의 정의관이 적용되고 있는 예로 도시재개발 사업을 들기도 한다.

4) 능력주의의 문제점을 밝힌 것으로 다음 문헌 참조; 마이클 영(Michael Young)/ 유강은 역, 『MERITOCRACY-능력주의』, 이매진, 2020;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 함규진 역, 『공정하다는 착각』, 와이즈베리, 2020.

5) 로직의 정의관과 그에 대한 비판은, 카렌 레바크(Karen Lebacqz)/ 이유선 역, 『정의에 대한 6가지 철학적 논쟁』, 간디서원, 2006, 112-143쪽 참조.

하고 그들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분배 정의의 원칙을 제시한다. 그가 제시한 이러한 정의를 흔히 ‘공정으로서의 정의’라 부른다.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는 아래 4절에서 상술한다.

(iv)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자들은 정의 문제를 포함한 도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정의 개념을 파악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⁶⁾ 이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현대 철학자는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이다. 샌델은 ‘시민’의 관점에서 공동체를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을 제안한다. 그는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라고 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정의론에 주목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샌델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공동체 속에서 필연적으로 존경, 미덕, 좋은 삶 등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쟁을 수반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미덕이나 탁월함에 대해 합당한 존경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이다.⁷⁾

(2) 법철학

법의 이념 혹은 목적이란 ‘법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법은 왜 있는가?’ 하는 물음인데, 정의는 바로 법의 이념 또는 목적이다. 이렇게 법과 정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법과 정의가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부터 불가분의 관계였다는 것은 어원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그리스어에서 디케(Dike)와 디카이온(Dikaion)은 각각 법과 정의를 의미한다. 또한 라틴어 유스(Jus)와 유스티티아(Justitia)도 각각 법과 정의를 의미한다.

물론 법의 이념 또는 목적으로 정의가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법의 이념론을 가장 총체적으로 서술한 학자는 독일의 법철학자 라드브루흐(G. Radbruch)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법의 이념을 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 이렇게 세 가지로 보았다.⁸⁾

라드브루흐는 정의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평균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관념을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분배적 정의가 정의의 원형이라고 한다. 평

6) 공동체주의 개념 및 비판은 다음 문헌 참조; 이찬훈, “통합적 관점에서 본 서구의 정의론”, 『인간·환경·미래』, 2021(제27호), 27-37쪽.

7) 마이클 샌델/ 이창신 역,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1, 제8강 - 10강.

8) 구스타브 라드브루흐(G. Radbruch)/ 최종고 역, 『법철학』, 삼영사, 2007, 63-66; 86-87; 110-112쪽.

균적 정의는 평등한 권리를 가진 자 사이의 정의인데, 당사자에게 평등한 권리, 평등한 교환 능력, 평등한 신분을 부여해 주는 분배적 정의의 작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⁹⁾

2) 정의의 분류

정의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인 두 가지 종류의 분류를 소개한다.

(1) 평균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i) 평균적 정의

평균적 정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며 사법의 영역에 속한다. 그 내용은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균형을 유지하고 사람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매매에 있어서 등가의 원칙, 손해를 입은 만큼 배상하도록 하는 원칙 등이다. 그것은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없이 항상 등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ii)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¹⁰⁾

분배적 정의는 비례적 평등을 의미하며 공법의 영역에 속한다. 그 내용은 ‘각자에게 그의 몫’¹¹⁾을 주기 위해서 특수지사나 자의를 배제하고 무사 공평하게 인간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훈장을 주는 경우 그가 기여한 공적을 기준으로 삼는 다거나, 부유한 사람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의를 ‘평균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로 분류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기원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5권에서 정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제3장에서 분배적 정의를, 제4장에서 시정적 정의(교정적 정의)를, 제5장에서 교환적 정의를 다루고 있다. 평균적 정의는 시정적 정의와 교환적 정의의 합체라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은 아래 3절에서 상술한다.

9) 구스타브 라트브루흐, 같은 책, 65쪽.

10) ‘배분적 정의’라고도 한다.

11)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도 같은 의미이다. 아래 각주 39번 참조.

(2)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i) 응보적 정의

고대 탈리오의 법칙에서 연원한 것으로, ‘선한 일을 한 자에게 그에 상응한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자에게는 또한 그에 상응한 벌을 주는 것’이 응보적 정의이다. 이러한 응보적 정의는 오랫동안 사법적(司法的) 정의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응보적 정의는 특히 국가의 형벌권 행사와 관련된다. 전통적으로 형벌의 본질은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이므로, 형벌의 내용은 범죄에 의한 해악을 형벌에 의해 응보하는 것이다.¹²⁾

(ii) 회복적 정의

회복적 정의는 범죄와 처벌에 대하여 전통적인 관점과는 다른 이해와 철학으로부터 출발한다. 현재 사법제도는 ‘어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응당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응보주의에 기반하여 범죄를 규정하고 형벌을 과한다. 그러나 회복적 정의에서는 범죄를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 사이에 피해와 관계의 훼손’을 가져온 것으로 이해하고, 따라서 어떻게 ‘그 깨어진 관계와 피해를 회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범죄는 국가가 만들고 지키도록 강제한 법에 대한 침해 행위가 아니라,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해를 끼치는 피해 행위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 그 범죄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정의이다.¹³⁾

3.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5권에서 정의를 본격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책 제5권은 모두 11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¹⁴⁾ 아리스토텔레스는

1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47쪽.

13) 회복적 정의는 그 연원이 정치철학이나 법철학 분야는 아니다. 회복적 정의에 관한 기본 개념에 관한 저술로, 하워드 제어(Howard Zehr)/손진 역,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KAP, 2012, 참조.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용식, “회복적 정의와 형사사법 정의-두 정의의 ‘절충’은 가능한 것인가?’, 『동아법학』, 2012(제54호), 417-448쪽, 참조.

14) 필자가 참고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번역본은, 박문재 역, 현대지성(2022)과 천병희 역, 숲(2018개정판)이다.

도덕적인 미덕으로부터 그의 정의 개념을 출발한다.¹⁵⁾ 덕은 실천을 통해서 얻고 그런 실천을 통해서 습관화된 것이 성품이다. 그는 정의란 이런 덕에 의해 습관화된 성품이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도덕적 미덕 안에서 이루어진 성품이 정의 개념의 기원이 된다. 또한 그의 정의란 중용을 의미하기도 한다. 단순히 양극단의 중간이 아닌 상황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최선의 것으로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중간을 말한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는 공정함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굳이 구별하자면 공정성이 정의보다 더 우월한 것이며 공정성은 정의이지만 법적 정의가 아니라 법적 정의를 바로 잡는 것이다.¹⁶⁾

1) 정의의 분류

(1) 넓은 의미의 정의

정의를 미덕 전체로서의 정의와 미덕 일부로서의 정의로 분류할 수 있다.¹⁷⁾ 전체로서의 정의를 넓은 의미에서의 정의 혹은 보편정의로, 미덕 일부로서의 정의는 좁은 의미의 정의 혹은 특수적 정의로 부르기도 한다. 미덕 전체를 가리키는 넓은 의미의 정의는 어떤 사람이 남에게 온갖 미덕을 행하는 것과 관련된다. 모든 미덕을 지키는 것이 곧 넓은 의미의 정의인 셈이다. 이런 정의는 정의 개념으로서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2) 특수적 정의

특수적 정의 혹은 좁은 의미의 정의는 ‘공평함’과 관련이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i)같은 정치체계에 속한 사람 사이에서 명예나 돈이나 그 밖에 나누어줄 만한 다른 것을 분배하는 일과 관련된 것, (ii)사람들 간의 거래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과 관련된 것. (ii)는 자발적인 거래와 비자발 거래 두 가지로 대별된다. (a)자발적인 거래와 관련된 것은 판매, 구매, 대부, 보증, 대여, 공탁, 임대 등이 있다. (b)비자발적인 거래의 예는 절도, 간통, 독살, 매춘 알선, 노예 사기, 암살, 위증과 같이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과, 폭행, 감금, 살인, 강도, 신체 절단, 명예 훼손, 모욕같이 강제적인 것이 있다. 앞의 (i)은 제3장의 분배적 정의, (ii)는 제4장의 시정적 정의와 관계된다.

15)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5권 제2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16)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5권 제10장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

17)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5권 제2장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2) 정의의 종류

(1) 분배적 정의¹⁸⁾

분배적 정의는 같은 정치체계에 속한 사람 사이에서 명예나 돈이나 그 밖에 나누어줄 만한 다른 것을 분배하는 일과 관련된 것이다. 어떤 가치에 비례해서 명예나 부 등을 분배해야 한다. 가치는 그 사회의 정치적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불의한 사람은 공평하지 않은 사람이고 불의한 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이므로, 공평하지 않은 것 사이에 중간이 존재하는데 이 중간이 바로 공평한 것이다. 불공평한 것이 불의한 것이라면, 공평한 것은 정의로운 것이다. 공평한 것은 중간이므로 정의로운 것도 어떤 중간이다.

공평한 것은 적어도 둘과 관련해 성립한다. 정의로운 것은 어떤 중간이고 공평한 것이며,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정의로운 것은 어떤 중간이라는 점에서 무엇과 무엇(각각 더 많은 것과 더 적은 것)의 중간일 수밖에 없고, 공평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둘이 관련될 수밖에 없으며, 정의로운 것이라는 점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일 수밖에 없으므로, 정의로운 것은 적어도 넷과 관련해 성립한다. 즉 정의로운 것과 관련해 필요한 당사자가 적어도 둘이고, 정의로운 것을 드러내는 데 필요한 몫 또한 둘이기 때문이다.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공평함과 각자의 몫 사이에 존재하는 공평함은 서로 동일해야 한다. 어떤 가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로운 분배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동일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정의는 일종의 비례적인 것이다. 정의로운 것은 비례에 따른 것이고, 불의한 것은 비례에 어긋난 것이다. 비례는 비율의 공평함을 의미하는데 앞의 넷과 관련하여 성립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하는 비례는 기하학적 비례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하학적 비례는 뒤에는 보는 산술적 비례와는 다른 것이다. ‘기하학적 비례에 따른 것’은 비율이 동등한 것을 의미하고, ‘산술적 비례에 따른 것’은 양이 동등한 것을 의미한다. 가령, A가 B에게 1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면, A는 그 동등한 금액(즉, 양)을 B에게 배상해야 하는 것이 산술적 비례에 따른 정의의 예이다.¹⁹⁾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각자 가진 몫 사이에서 기하학적 비례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분배는 부정의한 것이다.

18)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5권 제3장에서 분배적 정의를 다루고 있다.

19) 박문재, 앞의 번역본, 184쪽, 각주 132번.

(2) 시정적 정의²⁰⁾

사람들 간의 거래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과 관련된 것으로 자발적인 거래와 비자발 거래 것 모두에서 발생한다.

사람들 사이의 거래에서 정의로운 것은 공평함이고, 불의한 것은 불공평함이다. 하지만 그 공평함은 기하학적 비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산술적 비례에 따른 것이다. 훌륭한 사람이 나쁜 사람에게서 강탈했든 나쁜 사람이 훌륭한 사람에게서 강탈했든 그런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고, 훌륭한 사람이 간통했든 나쁜 사람이 간통했든 그런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즉 시정적 정의에서는 그 사람의 도덕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때리고 다른 사람이 맞거나, 한 사람이 죽이고 다른 사람은 죽임을 당했다면, 피해와 가해는 불공평하게 분배되었다. 따라서 재판관은 가해자에게서 이득을 빼앗음으로써 피해자의 손해와 균형을 맞추어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다. 공평함은 산술적 비례에 따라서 더 큰 것과 더 작은 것 사이에 있는 중간이다. 바로잡는 것과 관련하여 정의로운 것은 이득과 손해의 중간이다. 자발적인 거래에서 정의로운 것은 어떤 이득을 얻는 것과 손해를 입는 것의 중간이고 거래 이전과 이후에 같은 몫을 갖는 것이다.

(3) 교환적 정의²¹⁾

아리스토텔레스는 응보적 정의를 부정한다. 당한 것만큼 되갚아 주는 응보적 정의는 분배적 정의도 시정적 정의도 아니다. 그는 비례에 따른 교환을 강조하며 비례의 동등성이 보장될 때 교환이 일어난다고 한다.

교환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한데 묶는 것은 ‘동등한 것을 되갚아 준다’는 의미에서 상호주의적인 정의(응보적 정의)가 아니라, ‘비례에 따른 상호주의 정의’(비례에 따른 응보)이다, 국가는 비례적인 상호주의(비례적 응보)를 통해 유지된다.

건설업자는 제화공에게서 신발을 얻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집을 주어야 한다고 가정하면, 먼저 집과 신발 사이에 비례적인 공평함이 있고 그런 후에 상호주의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비례적인 상호주의’가 존재한다. 어떤 한 사

20)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5권 제4장에서 시정적 정의를 다루고 있다. ‘시정적 정의’는, ‘교정적 정의’, ‘조정적 정의’, ‘바로잡는 정의’ 등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21)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5권 제5장에서 교환적 정의를 다루고 있다.

람이 만들어낸 것이 다른 이가 만들어낸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닐 때는 둘의 가치를 공평하고 동등하게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교환되는 모든 것은 어떤 식으로든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나침과 모자람은 화폐로 평가되어, 집 한 채가 신발 몇 켤레와 동등한지 결정된다. 따라서 신발과 집 사이의 비례는 건설업자와 제화공 사이의 비례와 동일할 수밖에 없다. 만일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교환이나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비례관계는 교환이 있기 전에 먼저 정해져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 사이에서 동등한 교환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교환이 이루어진 후 비례관계가 정해진다면 한쪽이 이익을 보고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정의의 종류 이외에도 제6장에서는 정치적 정의를, 제7장에서는 자연적 정의와 법적 정의를, 제10장에서는 정의와 공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록 후세에 많은 정의론이 주장되었음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기본 틀로 하고 있다.

4. 존 롤스의 정의론

롤스는 공리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계약 이론을 발전시켜 하나의 합리적 의사 결정론과 관련시킨 자신의 정의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정의론은 사회계약론²²⁾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사회계약론의 자연 상태에 기초한 것으로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²³⁾ 원초적 입장이 고전적 계약론에서 자연 상태와 다른 점은 무지의 베일이라는 조건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1) 원초적 입장 - 무지의 베일

원초적 입장이란 계약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나 타인과의 차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 즉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에 가려진 상태로, 실제의 상황이 아니라 가정된 상황이다.²⁴⁾ 이러한 상황은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 상의 위치를 모르며 누구도 자기가 어떠한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는지를 모른다는 가정이다. 또한 당사자들은 자신의 가치관

22) 사회계약론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은 신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인간의 자발적 의사 합치로 도출된다.

23) 존 롤스(John Rawls)/ 황경식 역, 『정의론』, 이학사, 2003, 45-46쪽.

24) 존 롤스, 같은 책, 46-47쪽.

이나 특수한 심리적 성향까지도 모른다고 가정한다.²⁵⁾

정의의 원칙들은 이러한 무지의 베일 속에서 선택된다. 원칙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무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보장되는 결과, 모든 이가 유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 아무도 자신의 특정 조건에 유리한 원칙들을 구상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출된 정의의 원칙들은 공정한 합의나 약정의 결과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원초적 입장에서 도달한 합의는 공정한 것이 된다.²⁶⁾

2) 최소 극대화

합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동시에 이기적인 존재로서 도덕적 인격과 권리, 기회, 자유, 협동 등과 같은 사회적 기본가치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당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기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다. 이를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라고 한다. ‘최소 극대화의 원칙’은 계약당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자유와 최소한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침해받을 수 있는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즉 큰 이익을 위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소 극대화의 원칙’에 따른다는 의미는 최대의 이익은 누리지 못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자신의 삶을 위한 기본적 조건은 확보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²⁷⁾

3) 정의의 두 원칙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이 한 두 원칙을 채택한다.²⁸⁾ 첫 번째 원칙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반면에 두 번째 것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예를 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소수자의 노고가 전체의 보다 큰 선에 의해 보상된다는 이유로 어떤 제도를 정당화하는 일을 배제한다. 다른 사람의 번영을 위해서 일부가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편리할지는 모르나 정의롭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운한

25) 존 롤스, 같은 책, 46쪽.

26) 존 롤스, 같은 책, 46-47쪽.

27) 존 롤스, 같은 책, 126-128쪽.

28) 존 롤스, 같은 책, 49쪽.

사람의 처지가 그로 인해 더 향상된다면 소수자가 더 큰 이익을 취한다고 해도 부정의 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롤스는 다음과 같은 정의 두 원칙을 제시한다.²⁹⁾ 30)

제1원칙: 각자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들의 충분히 적절한 체계에 대해 동일한 불가침의 권리(claim)를 가지며, 이 체계는 모두가 동일한 자유들의 체제를 갖는 것과 양립한다.

제2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그것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하에 모두에게 열려 있는 직책과 지위에 결부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 그것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the least-advantaged members)의 최대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이 원칙들은 일차적으로는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며 의무와 권리의 할당을 규제하고 사회적·경제적 이익의 배분을 규제한다. 위와 같은 정식은 정의론의 목적상 사회 구조는 두 가지 다소 상이 한 부분을 갖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제1원칙은 그중 한 부분에 제2원칙은 다른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롤스의 정의론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규정하고 보장하는 사회 체제의 측면과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규정하고 확립하는 사회 체제의 측면을 구분한다.³¹⁾

제1원칙을 좀 더 쉽게,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의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의 원칙으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자유(투표의 자유와 공직을 가질 자유)와 언론과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인신의 자유,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와 이유 없는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이와 같은 자유들은 제1원칙에 따라서 평등해야 한다.³²⁾

29)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은 조금씩 수정되었는데 아래의 것은 수정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30) 에린 켈리(Erin Kelly)/ 김주희 역, 『존 롤스 공정의로서의 정의-재서술』, 이학사, 2020, 88-89쪽.

31) 존 롤스, 앞의 책, 106쪽.

32) 존 롤스, 같은 책, 106쪽.

제2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나 직위와 직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공정한 기회균등은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와 같은 형식적인 기회균등과는 다른 것으로, 공직과 사회적 지위가 형식적 의미에서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것을 차지할 공정한 기회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유사한 재능과 동기를 가진 이들에게는 대체로 동일한 문화와 성취의 전망이 존재해야 한다.³³⁾ 그 두 번째 조건은 ‘차등의 원칙’이라고 불리는데, 그것은 한 사회의 최고의 약자인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우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경우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2원칙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 자유의 권리 행사가 제약받을 수가 있는데, 이들의 자유 행사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나 제1원칙은 제2원칙에 항상 우선한다. 즉 제1원칙이 요구하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가 보다 큰 사회적·경제적 이득에 의하여 정당화되거나 보상될 수 없다.³⁴⁾

4) 우선성의 원칙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은 이들 원칙 간 그리고 원칙 내에서 ‘우선성’이 있는데, 소위 롤스의 ‘우선성의 원칙’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³⁵⁾

제1우선성 규칙(자유의 우선성)

정의의 원칙들은 축차적 서열로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기본적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a)덜 광범위한 자유는 모든 이가 공유하는 자유의 전 체계를 강화해야만 하고, (b)덜 평등한 자유는 보다 작은 자유를 가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

제2우선성 규칙(효율과 복지에 대한 정의의 우선성)

정의의 제2원칙은 서열상으로 효율의 원칙이나 이득 총량의 극대화 원칙에 우선해야 하며, 공정한 기회는 차등의 원칙에 우선해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즉 (a)기회의 불균등은 보다 적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의 기

33) 에린 켈리, 앞의 책, 90쪽.

34) 존 롤스, 앞의 책, 106-107쪽.

35) 존 롤스, 같은 책, 400-401쪽.

회를 증대해야만 하고, (b)과도한 저축률³⁶⁾은 결국 이러한 노고를 치르는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만 한다.³⁷⁾

5. 정의의 실현 수단으로 헌법상 평등권

전통적으로 정의의 개념은 평등으로 파악한다. 즉 정의는 평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³⁸⁾ 헌법상의 평등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에 따른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하여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³⁹⁾ 다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⁴⁰⁾ 구체적으로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하는 것은 가치판단의 문제로, 결국 평균적인 동시대의 정의 감정에 비추어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⁴¹⁾

1) 헌법상 평등권의 지위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나 취급을 받지 않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대우나 취급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이 바로 평등권이다. 평등권이 침해되는 경우 재판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 권리이며 주관적 공권(公權)이다. 또한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에 공통으로 인정되는데, 자유권 인정에서의 평등, 참정권에서의 평등, 청구권의 평등한 보장 등이 그 예이다.

2) 헌법상 평등권 규정

헌법 제11조가 대표적인 평등권 규정이지만, ‘그밖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

36) “과도한 저축률”의 의미 추가 설명; 롤스의 정의론을 소개하고 있는 많은 한글 문헌 중 ‘정의로운 저축 원칙’으로 번역된 원문은 ‘Just Savings Principle’로, 이는 우리가 통상 이해하고 있는 ‘저축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는 롤스가 만들어 낸 용어로 현세대의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 즉 자원을 미래세대에게도 남겨줄 의무를 의미한다(이런 의미에서는 저축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사회의 잉여자원을 모두 분배해 버린다면 다음 세대의 삶이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과거 세대로부터 창출된 문명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도 적정수준은 이전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도한 저축률”은 바로 ‘Just Savings Principle’에서 나온 것이다.

37) 롤스의 정의론과 관련하여, ‘정의의 원칙’이 도출되는 과정과 ‘정의의 원칙’ 자체에 대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비판이 있다. 대표적으로, 카렌 레바크, 앞의 책, 89-111쪽; Will Kymlicka/ 장동진 외 3인 역,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2018, 127-135쪽; 마이클 샌델 / 이창신 역, 앞의 책, 200-231쪽 등 참조.

38) 최종고, 『법학통론』, 박영사, 2008, 42-43쪽;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463-466쪽;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5, 327쪽; 김도균, 앞의 책, 11-14쪽.

39)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과 같은 의미로 이를 더 발전시킨 것이다. 김도균, “한국 법질서와 정의론: 공정과 공평, 그리고 운의 평등”, 『서울대학교 법學』, 2012(제53권 1호), 349쪽.

40) 헌법재판소, 2009헌마538, 2001.3.21. 결정; 2000헌바25, 2001. 12. 20. 결정 등 다수.

41) 허영, 앞의 책, 327쪽.

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전문(前文), 교육의 기회균등(제31조 1항), 여성 근로자의 차별금지(제32조 4항),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제36조 1항),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경제의 민주화(제119조 2항) 등의 규정이 있다.

3) 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법 앞에 평등의 의미

법을 집행하거나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의 내용도 평등한 것이어야 한다. 이 원칙은 불법 영역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평등의 의미

(i) 상대적 평등

헌법 제11조에서 정한 법 앞의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ii) 실질적 평등

헌법 제11조의 평등은 형식적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 기회의 평등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iii)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⁴²⁾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과거에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온 일정 집단에 대해 그러한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취업이나 입학 기타 사회적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여하는 정부 정

4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11조에서 찾는 것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책이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관련된 현행 법제에는 여성할당제, 양성채용목표제, 여성공천할당제, 장애인고용할당제 등이 있다.

III. 성경상의 공의와 정의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아모스 제5장 24절).

성경은 공의나 정의 자체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불의를 고치라고 명령하고 있어서, 성경은 독자가 정의나 공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III. 장에서는 우선 성경에서 비슷한 용어로 사용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는 공의와 정의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 그 후 성경상 정의 혹은 공의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한편, 개역개정 성경에서 공정이라는 용어는 여섯 차례(구약 4곳, 신약 2곳) 사용되고 있는바, 이들 모두 아래에서 설명하는 정의나 공의에 해당하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성경에서 공정이라는 용어는 정의나 공의의 의미에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공정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사용되지 않고, 정의나 공의의 의미와 유사한 것이므로 본장에서는 공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다.

1. 정의와 공의의 의미

1) 정의와 공의의 사전적 의미

먼저 한국어 정의와 공의의 의미부터 알아보자. 정의(正義)의 사전적 정의(定義)는 앞 II. 1.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라고 하거나,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다. 공의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라고 하거나, ‘공평한 도리’(고려대 국어사전)라고 한다. 도의는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 의리’이고, 도리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길’을 의미한다(이상 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도의와 도리는 유사한 말이다(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이상 정의와 공의와 관련된 사전적 의미를 종합해보면, 두 용어의 의미를 일상에서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아마 실제 생활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혼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의란 용어를 종교적 의미와 상관없이 일상언어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⁴³⁾

2) 구약성경

(1) 정의와 공의의 사용례

구약성경에서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원어는 미쉬파트와 체다카이다. 구약성경에는 공의나 정의가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모스 제5장 24절을 들 수 있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개역개정)

“But let justice roll on like a river, righteousness like a never-failing stream!” (NIV). “But let justice roll down like waters, And righteousness like an ever-flowing stream.” (NASB)

위 아모스 인용 구절에서 정의는 히브리어 ^{מִשְׁפָּט}(mishpat; 미쉬파트)의 번역어로 영어 성경은 justice로 번역하였다. 한편 공의는 히브리어 ^{צְדָקָה}(tsedaqah; 체다카)의 번역어로 영어 성경은 righteousness로 번역하고 있다. 공의를 의미하는 원어로 체다카 이외에 체테크(^{צֶדֶק})도 있으나 두 용어는 특별히 구분할 필요는 없으므로⁴⁴⁾, 본고에서는 체다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정의 혹은 공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쉬파트와 체다카의 의미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미쉬파트와 체다카의 의미는 여러 문헌에서 다루고 있지만 일관된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모스 제5장 제24절 (개역개정)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와 관련하여, 히브리어 성경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정의를 미쉬파트로, 공의를 체다카로 표현하였지만, 여러 한글 번역본은 일관적이지 않다. 미쉬파트에 대하여 바른 성경과 표준 새번역은 ‘공의’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개역성경은 ‘공법’으로, 공동번역은 ‘정의’로 번역하고 있다. 체다카에 대하여, 바른 성경과 표준 새번역, 그리고 개역성경은 ‘정의’로 번역하고 있지만, 공동번역은 ‘서로 위하는 마음’으로 의역하고 있다.

43) 인터넷 검색에서 종교 관련 이외 영역에서 ‘공의’란 용어가 사용되는 예는 거의 찾을 수가 없었다.

44) 이동수, “미가서에 나타난 정의와 공의”, 『장신논단』, 1999(제15호), 58쪽.

(2) 두 용어 מִשְׁפָּט(mishpat; 미쉬파트), תְּשׁוּבָה(tsedakah; 체다카)의 의미

(i) 한글 번역 성경

개역성경은 같은 체다카에 대하여 정의, 공의, 공법, 공평 등 여러 단어로 번역했다.⁴⁵⁾ 구약성경은 체다타가 157번, 체테크가 119번 사용되고 있다.⁴⁶⁾ 미쉬파트는 구약성경에 422 혹은 424번 나타나는데, 개역개정에는 정의 이외에도 공도, 율례, 판결, 규례, 법도, 재판, 법, 사연, 송사, 관습, 제도, 식양, 풍속, 심문, 직무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었다.⁴⁷⁾

결론적으로 한글 번역 성경상으로는 공의나 정의를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두 용어를 동의어로 이해하기도 한다.⁴⁸⁾

(ii) 두 원어는 다른 의미인가?

개역개정 성경에서 정의는 주로 미쉬파트를 번역한 것이고 공의는 체다카를 번역한 것이다. 영어 성경은 전자는 justice, 후자는 righteousness로 번역하고 있다.

분명히 두 용어는 같은 의미는 아니나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⁴⁹⁾ 미쉬파트란 단어는 법정에서 기원한 것으로 명백하게 정의를 의미하고 있으며, 체다카의 본래적 의미는 곧고 정확하며 올바르다는 것이다.⁵⁰⁾ 그러나 공의로 번역된 체다카는 기독교 교리에서 사용된 칭의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서의 의’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도덕적 정직이나 청렴을 의미하지도 않는다.⁵¹⁾ 52)

좀 더 구체적으로 미쉬파트는 재판하다, 다스리다는 동사 ‘사파트’에서 파생된

45)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헌 참조; 김창락, “성서에 사용된 정의와 관련된 용어들의 번역에 대하여 -‘미쉬파트’, ‘체다카’, ‘체테크’, ‘디카이오쉬네’의 용례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012(제30호), 163쪽. 체다카를 ‘공정’으로 번역한 예도 있다(신명기 25장 15절).

46) 김래용, “하박국서에 나타난 미쉬파트연구”, 『구약논단』, 2013(제48호), 57쪽; 김창락, 앞의 논문, 163쪽.

47) 김래용, 앞의 논문, 99쪽; 이동수, 앞의 논문, 57쪽. 미쉬파트를 ‘공정’으로 번역한 예도 있다(신명기 1장 16절).

48) 김창락, “칭의론과 정의”, 『칭의와 정의』, 새물결플러스, 2017, 94쪽.

49)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 배덕만 역, 『하나님의 정의』, 복있는 사람, 2017, 151쪽.

50) 월터스토프, 같은 책, 151쪽.

51) 월터스토프, 같은 책, 152-153쪽.

52)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정의 개념을 칭의 혹은 구원과 관련된 것으로 주장하는 문헌으로 다음 참조; 김동춘, “칭의와 정의”, 『칭의와 정의』, 새물결플러스, 2017, 440-484쪽.

명사로, 재판의 판결에 따른 심판, 어떤 상황에 적절한 정의, 올바른 것, 관습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⁵³⁾ 체다카는 하나님이나 사람과의 관계의 요구를 성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⁵⁴⁾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통적인 칭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⁵⁵⁾

정의를 개인들 혹은 집단들 간의 바른 관계를 가져오는 힘으로 정의하고, 미쉬파트는 주로 잘잘못을 가르는 것으로, 체다카는 바른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체다카가 정의를 위한 기본 개념이고 미쉬파트는 보완개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⁵⁶⁾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마음 자세나 삶의 태도를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되며, 사회나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 언급될 때는 주로 ‘정의’란 표현으로 구분하여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고도 설명한다.⁵⁷⁾ ‘미쉬파트’는 주로 사법적 정의를 의미하는 한편, ‘체다카’는 ‘미쉬파트’보다 더 폭넓은 의미를 지닌 단어로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 속성이라 할 수 있는 공의를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라고도 한다.⁵⁸⁾

(3) 소결

한글 성경의 용어로 정의와 공의의 의미를 확정할 수 없다. 같은 역본 내에서도 같은 원어를 다른 한글 용어로 번역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번역본에 따라 원어를 다른 용어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공의와 정의는 구별하여 사용하기 힘들고 실제 혼용할 것이다. 원어의 의미에 있어 ‘체다카’는 ‘미쉬파트’보다 광의의 개념이요 보다 원리적인 면을 가리킨다면, ‘미쉬파트’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두 용어, ‘체다카’와 ‘미쉬파트’는 쌍을 이루어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앞의 아모스의 인용 구절은 교차대구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예이다.⁵⁹⁾

3) 신약에서의 정의와 공의

신약성경에는 ‘정의’라는 단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신약성경은

53) 이동수, 앞의 논문, 57쪽.

54) 이동수, 같은 논문, 57쪽.

55) 월터스토프, 앞의 책, 152쪽.

56) 권진관, “참여로서의 정의: 예수의 정의관 연구”, 『종교와 정의-제4세대 통전적 정의론 모색』, 동연(2015), 197쪽.

57) 『라이프성경사전』, 2006, 생명의 말씀사, 인터넷판.

58)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아모스/나훔 편, 2007, 제자원, 325쪽.

59) 앞의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325-327쪽.

정의를 말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신약성경에서 정의와 관련된 원어와 한글 성경에서의 의미를 살펴본다.

(1) 신약에서 정의와 관련된 원어의 사용례

개역개정 신약성경은 공의가 8번 사용되고, 정의는 한 번만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로 κρίσις(크리시스)와 δίκη(디케) 및 δίκαιος(디카이오스)가 있다. 정의로 번역된 것은 κρίσις(크리시스)이다(마23:23). 공의로 번역된 것 중 3개는 κρίσις(크리시스)와 관련된 단어이며 (눅11:42; 요7:42; 행17:31), 한 곳은 δίκη(디케)(행28:4)을, 세 곳은 δίκαιος(디카이오스)와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살후1:5, 벧전2:23- δικάϊως; 계19:11- δίκαιοσύνη). 나머지 한 곳은 원어에는 해당하는 단어가 없다(살후1:7).

헬라어 성경에서 κρίσις(크리시스) 및 관련 파생어는 118번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심판 혹은 그와 관련된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헬라어로 정의 또는 그것과 연관된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로 가장 보편적인 것이 디카이오쉬네(δικαιοσύνη)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디카이오쉬네는 헬라어 성경에서 90여 회 나오지만, 개역개정에서 정의로 번역된 곳은 한 곳도 없고, 세 번 ‘공의’로 번역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의’로 번역되었다.⁶⁰⁾

(2) 디카이오쉬네(δικαιοσύνη)의 잘못 사용

신약의 헬라어 원전에서 정의를 의미하는 디카이오쉬네(δικαιοσύνη)는 대부분 영어 번역에서 justice보다는 righteousness로 번역하고 있고, 한글 성경도 대부분 ‘의’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은 디카이오쉬네의 본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한 것이다. 디카이오쉬네는 본래 정의(justice)를 의미하는 디크(δικ)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이고, 오늘날의 영어로 righteousness는 결코 justice와 동의어가 아니며, 성경에서 의 혹은 의로움(righteousness)은 정의와는 다른 의미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61) 62)}

(3) 소결

종합하여보면, 한글 신약성경에서 정의라는 용어가 한 곳만 나타나고 있으나,

60) 김창락, 앞의 논문, 163쪽.

61) 월터스토프, 앞의 책, 146-148, 154-156쪽.

62) 앞의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정의’도 헬라어 디카이오쉬네(δικαιοσύνη)를 번역한 것이다.

원어(헬라이어)는 정의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가 있다. 따라서 신약성경에도 정의의 개념이 들어 있는 구절이 있다. 신약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의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도 의미상 정의 개념에 포함 가능한 것이 있다.

4) 정리

신구약 한글 성경에서 사용되는 공의나 정의의 의미는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 실제로 있어서는 혼용한다.

구약성경에서 히브리로 정의나 공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어휘는 מִשְׁפָּט (mishpat; 미쉬파트)와 צְדָקָה (tsedaqah; 체다카)인데, 후자가 더 넓은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구별하여 사용하기는 힘들다. 한글 번역 성경은 번역본 내에서 또 번역본 간 같은 원어를 다른 한국어로 번역 사용하고 있으므로 더욱 두 용어의 의미를 서로 구분하기 힘들다.

신약성경도 사용된 용어를 통해 정의나 공의를 찾아내기 어렵다. 대표적인 정의와 관련된 헬라이어 디카이오쉬네($\delta\iota\kappa\alpha\iota\omicron\sigma\upsilon\nu\eta$)를 한글 성경은 의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신약도 내용상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하 본고에서는 정의의 개념에 공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정의’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2. 성경에서 정의의 의미와 그 실천

성경은 정의 혹은 공의를 한가지 뜻으로만 사용한 것은 아니며 여러 문맥 속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구약의 경우, 정의를 나타내는 용어 미쉬파트의 사용례를 여섯 가지 혹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⁶³⁾ (1) 미쉬파트를 여섯 가지로 세분하여 설명한 경우: (i) 제비뽑기와 관련된 경우 (ii) 사법제도와 관련된 경우 (iii) 법적 권리나 정의로 사용된 경우 (iv) 율법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 (v) 관습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 (vi) 절제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 (2)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 경우: (i) 사법적인 함축을 지닌 경우 (ii) 율법을 의미한 경우 (iii) 신의 명령을 나타낸 경우 (iv) 예언 문학에서 심판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 정의 개념은 이렇게 여러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정의의 개념이 일의적이지 않고 관련된 곳에서

63) 김래용, 앞의 논문, 101-104쪽은 미쉬파트와 체다카의 연구사를 간략히 정리 소개하고 있다. 본고에서 인용한 여섯 가지와 네 가지 분류는 이 문헌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다.

각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신약의 경우에는 정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그러함에도, 실질적으로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신약의 경우에도 정의의 개념은 일의적이지 않다.

이하 본 절에서는 성경에서 정의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다른 학문 분야에서 분류한 정의의 분류기준에 따라 정리한다.

1) 응보적 정의-사법적 정의

구약성경 모세의 율법은 응보적 정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생명에는 생명으로써, 눈에는 눈으로써, 이(齒)에는 이로써’(신명기 10장 21절) 라고 표현되어 있는, 소위 탈리오 법칙은 응보적 정의의 기초형태라 할 것이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선한 일을 한 자에게 그에 상응한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자에게는 또한 그에 상응한 벌을 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응보적 정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시편 62편 12절)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은 구절은 응보적 정의관에 기초한 것이다.

이러한 응보적 정의는 사법적(司法的) 정의의 기초이기도 하지만, 성경 혹은 하나님의 정의의 가장 기본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보적 정의가 신약 시대에 와서 사랑으로 대체된 것은 아니다.⁶⁴⁾ 그럼에도 신약시대 응보적 정의는 구약시대만큼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는 것을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알 수 있다. 예컨대, 예수는 간음한 여인에 대해 처벌을 요구한 유대인들의 요구에 결국 그 여인을 율법대로 처벌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였다.⁶⁵⁾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 정신을 강조하였다.⁶⁶⁾

전통적인 기독교 구원교리의 핵심인 칭의(justification)도 이 응보적 정의 혹은 사법적 정의와 관련된 것이다.⁶⁷⁾ 예수는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죽어야 했

64) 윌터스토프, 앞의 책, 130-136쪽.

65) 요한복음 제8장 1-11절.

66) 마태복음 제12장 9-13절, 마가복음 제3장 1-6절, 누가복음 제6장 6-11절.

67) 정의를 법적 정의-justice, 도덕적 정의-righteousness, 종교적 정의-justification로 구별하는 문헌도 있다. 폴 틸리히(Paul Tillich)/ 성신형 역, 『사랑 힘 그리고 정의』, 한들출판사(2017). 28쪽. 틸리히는 정의를 존재의 형식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의의 가장 궁극적인 형태는 ‘창조적인 정의’라고 한다. 틸리히는 응보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를 본질상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

던 것이다.⁶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공의(정의)를 실현한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지은 자를 그냥 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벌을 받으므로 율법을 요구를 충족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 것이다.

의롭게 된다는 것을 한자 표현으로 칭의(justification)라고 한다. 신학적 정의로 칭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의⁶⁹⁾에 기초하여 죄인에 관한 모든 율법적 요구가 만족된 것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적 행위’라고 한다.⁷⁰⁾ 재판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적 요구 즉 율법적 요구가 충족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한 벌 즉 응보적 요구가 충족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칭의 혹은 이신칭의 전체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응보적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⁷¹⁾

2) 분배적 정의

성경은 응보적 정의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런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곳에서 현대적 관념에서 보면 분배적 정의에 해당하는 그런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1) 약자에 대한 배려

계약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고아나 과부, 나그네 등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한다.⁷²⁾ 이러한 정의관은 분배적 정의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⁷³⁾ 구

면서, 창조적인 정의는 올바른 분배 정의보다 더 나은 정의라고 한다. 텔리히는 신의 정의가 때로는 정의로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신의 정의가 창조적인 정의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에 의하면 창조적인 정의는 사랑의 형식으로 드러난다.

68) 김판임, “신약성서의 정의 이해—예수와 바울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2016(23-1권), 75쪽. (인용 논문에서 저자가 직접 ‘응보적 정의’ 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은 응보적 정의와 다를 바 없다).

69) ‘의’는 윤리 도덕상의 올바른 행실이나 착함, 혹은 공정하고 참되며, 경건하고 정직하다는 뜻으로,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출 9:27; 욥 22:3; 잠 11:5; 13:6).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서 ‘의’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다(대하 12:6; 시 4:1; 사 45:24; 렘 12:1). 하나님은 인간들에게도 의를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결국 인간은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다.

70) 한편, 율법적 요구가 만족된 것을 의라 한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는 예수를 믿는 죄인에게 전가됨으로써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이다.

71) 이를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아래 (4) 참조.

72) 월터스토프, 앞의 책, 116-129쪽.

약에서 분배적 정의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 신명기 제24장 17-22절을 들 수 있다.⁷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췌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개역개정)

(2) 안식년과 희년제도

이 제도는 불공평한 구조의 재분배를 의미하고, 부의 집중을 막아주는 장치로 사회적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날의 의미로는 분배적 정의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안식년은 7년을 한 주기로 하여 여섯째 해 다음 제 7년째 되는 해이다. 이는 안식일 개념이 확대된 것으로서, 휴식과 회복, 면제와 해방의 뜻이 담겨 있는 제도이다. 대표적 성경 근거는 다음과 같다.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개역개정, 출애굽기 23장 10-11절)

희년은 안식년제도가 확대된 것으로, 이는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다음 해 곧 50년째 되는 해를 말한다. 이는 해방의 해로서,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고, 모든 소유가 원주인에게로 되돌려지며, 모든 땅은 휴경하게 된다. 대표적인 성경 근거로 레위기 제25장 8-12절을 들 수 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 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73) 소위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는 것을 분배적 정의로 보는 또 다른 문헌으로, 안계정, 『기독교와 정의』, 아담, 2013, 221-222쪽.

74) 월터스토프, 앞의 책, 120-121쪽.

동안 곧 사십구 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회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오십 년째 해는 너희의 회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회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개역개정)

(3) 십일조

성경의 십일조도 분배적 정의를 실천하는 중요한 예이다.⁷⁵⁾ 십일조는 모든 소유와 생산의 1/10, 곧 수입의 십 분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 사용처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i)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성전에서 봉사하는 책임을 맡은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 사용하는 것, (ii)성전 내의 각종 행사나 성전 기구들의 수리 및 보수를 위해 사용하는 것, (iii)고아와 과부와 객 등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도록 한 것.

십일조가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위 세 번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즉 고아와 과부와 객 등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한편 일정한 소득이 없는 레위인을 위해 사용한 것도 분배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도 나눔의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성경적 근거는 신명기 제14장 28-29절이다. “매 삼 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 분의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개역개정)

3) 신약성경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성경상의 정의의 구체적인 적용 예시로 주로 구약성경을 들었으나, 신약성경의 정의 적용도 구약성경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의 정의 관념이 바뀐 것도, 사랑으로 대체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구약의 정의 관념이 신약에 와서 바뀌었다면 예수는 죽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물론 예수의 죽음으로 구약의 정의 관념이 바뀐 것도 아니다.⁷⁶⁾

75) 안계정, 앞의 책, 226쪽.

(신약의 응보적 정의)

예수도 하나님 나라와 심판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하였고, 바울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였다. 기본적으로 신약의 응보적 정의관은 구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예수는 응보적 정의를 구약보다 더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암시하였다.⁷⁶⁾

(신약의 분배적 정의)

그렇지만 신약성경도 하나님의 심판만 강조한 것은 아니고, 분배적 정의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 예수는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⁷⁷⁾ 가난하고 불우한 자에 대한 관심 이외 분배적 정의의 실현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본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마태복음 20장 1-16절)에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하루 일한 시간의 장단과 상관없이 모두 한 데나리온씩 지불하였다. 물론 한 데나리온은 일꾼 각각과 약속한 금액이기는 하다. 포도원 주인이 일을 조금 한 사람과 많이 한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한 것은 정의로운 것인가? 절대적 평등을 강조한 측면에서 보면 이는 정의롭지 못한 것이지만, 실질적 평등 혹은 결과적 평등을 강조한 분배적 정의의 측면에서 보면 수긍이 간다. 이에 따라 본 구절을 분배적 정의를 강조한 구절로 이해하기도 한다.⁷⁸⁾

기타 분배적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는 곳으로, 초대교회의 나눔의 공동체(사도행전 2장 44-46절)와 헌금의 준비와 원리를 제시한 바울 서신서(고린도후서 8장 1-15절)를 들 수 있다.⁸¹⁾ 또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누가복음 12장 16-21절)와 삭개오 이야기(누가복음 19장)도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76) 월터스토프, 앞의 책, 130-136쪽.

77) 앞 (1) ‘응보적 정의·사법적 정의’ 설명 참조.

78) 예수의 가난하고 불우한 자에 대한 관심은 복음서 많은 부분에 산재하고 있어 구체적인 예를 들 필요가 없을 것이다.

79) 예컨대, 김관임, “포도원 주인의 비유(마 20:1-15)를 통해서 본 경제정의에 대한 예수의 이해”, 『신학사상』, 2011(154호); 김관임, 앞의 논문, 54-58쪽. (저자는 포도원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경제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성경상 경제정의란 인간의 업적과 노동량에 의해 설정되는 업적 위주의 정의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권을 위해 필요한 것을 보장해 주는 필요 위주의 정의라고 한다— ‘주인은 해가 지기 한 시간 전이라도 품꾼으로 고용함으로써 그에게 하루 품삯을 주고자 한다.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임금의 1/10을 줄 수는 없는 일이다. 최소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은 있어야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분배적 정의의 실천과 다르지 않다.

80) 물론 전통적인 성경해석은 이를 정의의 문제로 보지는 않는다.

81) 안계정, 앞의 책, 233-236쪽.

4) 회복적 정의

‘회복적 정의’는 사법의 응보 및 처벌적 정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용서와 화해,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⁸²⁾ 회복적 정의는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한다. 어쩌면 성경 전체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약의 회년 제도도 회복을 이야기 한 것이고, 기독교의 구원교리도 회복이다. 기독교의 전통적인 구원관에서 구원은 죄에서 해방이고, 죄에서 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회복은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회복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과정에서 예수의 십자가 희생은 회복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간에 화해와 용서 그리고 인간 사이의 화해와 용서를 의미한 것이다. 기독교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이 회복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며, 인간(신자)은 이 회복된 관계를 삶에서 실천하여야 하는 것인바, 그것이 곧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다.

성경에서 응보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도 그 형벌 자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의 회복 그리고 개인 상호 간 관계의 회복 및 공동체의 회복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경의 사랑이 바로 화해와 회복의 실천이다. 그렇다면 성경이 회복적 정의를 요구 혹은 실천하고 있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회복적 정의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서의 회복적 정의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 회복적 정의의 실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는 교파나 개인의 신앙관에 따라 다를 것이다.

IV. 성경의 정의와 철학 등에서 정의와의 관계

이번 장에서는 성경상의 정의와 성경이외 분야에서의 정의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철학에서의 정의나 성경에서의 정의도 각각 일의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교에 한계는 있으나 큰 틀에서의 비교·분석을 할 것이다.

첫째로, 외견상 서로간의 공통점은 전통적인 정의 관념이라 할 수 있는 응보적 정의관이다. ‘죄지는 자를 벌하지 않는다면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이나 일반 철학사상에서 일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인류의 법 감정이나 정의 관

82) 앞 각주 13번 및 본문 참고. 하워드 제어(Howard Zehr)는 회복적 정의의 최초 주창자이다.

넘과도 일치한 것이다.

그러나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식의 응보적 정의가 성경에서 선악을 심판하는 기본 전제이기는 하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성경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정의 관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예수도 응보적 정의를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철학 분야에서도 응보적 정의가 사법적 정의의 기초라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나, 행한 대로 갚아주는 식의 정의 실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다양한 대안적인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이나 철학에서 응보적 정의가 정의 관념의 대표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응보 형태를 정의로 간주하지 않았다.

둘째로, 성경과 철학에서의 정의 관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성경에서 정의는 하나님께서 부여한 것으로 정의의 실천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인간(신자)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다. 반면, 철학에서 정의는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것이다. 단지 전체 공동체를 중요시 할 것인가,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할 것인가, 아니면 당사자의 합의를 중요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정의의 개념이나 강조점이 다르다.

셋째, 이렇게 성경과 철학에서의 정의는 그 시원이 다른 것이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는 서로 조화 내지 양립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우선 개인의 자유를 제일로 하여 실력대로 배분하는 완전자유주의 정의관은 성경상 정의 개념과 양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밖의 공리주의 정의관, 공동체주의 정의관, 그리고 사회계약론적 정의관은 그 적용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성경상의 정의의 실천과 양립할 수 있을 것이다.⁸³⁾

넷째, 우리나라 헌법상 평등권의 실현은 성경상 정의관과 배치되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의는 평등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정의의 실현은 평등권의 실현으로 구체화된다. 우리나라 헌법도 평등권 조항이 여럿 있고, 평등권 실현을 위한 여러 개별 입법이 있다. 성경의 정의와 헌법상 평등권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헌법상 평등권에 맞게 국가를 운영하는 것, 헌법상 평등권 정신에 맞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제정 목적에 맞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성경상 정의 관념에 맞는 것이다. 다만, 평등권 실현을 위한 입법사항 중 어떤 것은 전통적인 성경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헌법상 평등권 실현 조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이 부분에 한해서는 헌법상 평등권의 실현이 성

83) 롤스의 정의론이 성경적 정의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으로 다음 문헌 참조; 김상득, “존 롤스의 정의론과 성경적 정의관”, 『동서철학연구』, 2021 (제100호), 397-398쪽.

경상 정의 관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다섯째, 오늘날 정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에 집중된다.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일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문제 되는 것이다. 헌법상 평등권의 실현도 분배적 정의의 문제이다.

분배적 정의는 기본적으로 가진 자의 양보를 전제로 한다. 국가는 가진 자의 양보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물론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만, 그 강제에 가진 자의 동의를 전제한 것이다.⁸⁴⁾ 성경도 분배적 정의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은 교리이므로 이 점에서 보면 강제 규범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분배적 정의의 실천은 강제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성경의 교리를 지키느냐 없느냐는 신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면 분배적 정의의 실천은 자율적인 것이다. 성경에서 분배적 정의는 그 정신이 사랑의 실천에 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해보면, 성경의 분배적 정의가 헌법상의 분배적 정의 보다 더 자율적이고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응보적 정의의 보완 내지 대안으로 많이 논의 되고 있는 회복적 정의의 실천은 교회와 사회가 쉽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본고의 연구 목적을 넘으므로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한다.

V. 요약 및 결론

본고에서는 정의, 공정, 공의 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분석·정리하였다. 그 결론으로 이들 용어는 정의 하나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정의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한편 현대에 있어서 정의는 평등의 개념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우리나라 헌법상 평등권의 내용을 개관하였다.

정치철학과 법철학 등에서의 정의의 관점 및 분류를 정리하였다. 중요한 정의 개념을 정립한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현대 철학자 존 롤스의 정의론을 정리·소개하였다.

구약성경의 정의와 관련된 두 원어 미쉬파트와 체다카의 쓰임을 분석하여 두

84) 완전자유주의자는 이러한 강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양보가 아니라 빼앗긴 것이다.

용어를 특별히 구별하여 사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밝혔다. 신약에는 정의라는 용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으나 정의를 나타내는 헬라어 원어는 사용되고 있으므로 신약 성경도 내용상으로는 정의에 해당하는 구절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신구약 번역 성경에서 사용되는 공의나 정의의 의미는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고 실제에 있어서 혼용한다는 점도 밝혔다.

신구약 성경의 정의 개념은 일의적이지 않으므로 문맥과 상황에 따라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성경상의 정의의 의미와 그 실천을 응보적 정의, 분배적 정의,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성경의 정의도 응보적 정의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이는 성경이 궁극적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정의라고 할 수는 없다. 성경은 분배적 정의를 강조하고 궁극적으로는 회복적 정의를 지향한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정의와 철학 등에서의 정의를 비교·분석하였다. 성경의 정의는 신의 명령으로부터 기원한 것이고, 철학상의 정의는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두 영역에서 정의 개념은 다른 것이다. 그러나 그 실천에 있어서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완전자유주의 정의론을 제외한 나머지 정의 관념은 성경과 조화할 수 있다. 분배적 정의를 강조한 정의론과 회복적 정의론은 성경의 정의와 많은 부분 조화점을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구스타브 라드브루흐(G.Radbruch)/최종고 역(2007), 『법철학』, 삼영사.
- 권진관(2015), “참여로서의 정의: 예수의 정의관 연구”, 『종교와 정의-제4세대 통전적 정의론 모색』, 동연.
- 김도균(2021), 『한국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아카넷.
- _____(2012), “한국 법질서와 정의론: 공정과 공평, 그리고 윤의 평등”, 『서울대학교 法學』, 제53-1호.
- 김동춘(2017), “칭의와 정의”, 『칭의와 정의』, 새물결플러스.
- 김래용(2013), “하박국서에 나타난 미쉬파트연구”, 『구약논단』, 제48호.
- 김상득(2021), “존 롤즈의 정의론과 성경적 정의관”, 『동서철학연구』, 제100호.
- 김창락(2012), “성서에 사용된 정의와 관련된 용어들의 번역에 대하여 -‘미쉬파트’, ‘체다카’, ‘체테크’, ‘디카이오쉬네’의 용례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제30.

- _____(2017), “칭의론과 정의”, 『칭의와 정의』, 새물결플러스.
- 김철수(2013), 『헌법학신론』, 박영사.
- 김판임(2016) “신약성서의 정의 이해 - 예수와 바울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23-1권.
- _____(2011), “포도원주인의 비유(마 20:1-15)를 통해서 본 경제정의에 대한 예수의 이해”, 『신학사상』, 154호.
- 니콜라스 월터스토르프(Nicholas Wolterstorff)/배덕만 역(2017), 『하나님의 정의』, 복있는 사람.
-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함규진 역(2020), 『공정하다는 착각』, 와이즈베리.
- 마이클 샌델/이창신 역(2011),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 마이클 영(Michael Young)/유강은 역(2020), 『MERITOCRACY-능력주의』, 이매진.
- 아리스토텔레스/박문재 역(2022), 『니코마코스 윤리학』, 현대지성.
- 아리스토텔레스/천병희 역(2018), 『니코마코스 윤리학』, 숲.
- 안계정(2013), 『기독교와 정의』, 아담.
- 에린 켈리(Erin Kelly)/김주희 역(2020), 『존 롤스 공정의로서의 정의-재서술』, 이학사.
- 이동수(1999), “미가서에 나타난 정의와 공의”, 『장신논단』, 제15호.
- 이용식(2012), “회복적 정의와 형사사법 정의-두 정의의 ‘절충은 가능한 것인가?’, 『동아법학』, 제54호.
- 이재상(2010), 『형법총론』, 박영사.
- 이찬훈(2021), “통합적 관점에서 본 서구의 정의론”, 『인간·환경·미래』, 제27호.
- 제자원(2007),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아모스/나훔 편.
- 존 롤스(John Rawls)/황경식 역(2003), 『정의론』, 이학사.
- 최종고(2008), 『법학통론』, 박영사.
- 카렌 레바크(Karen Lebacqz)/이유선 역(2006), 『정의에 대한 6가지 철학적 논쟁』, 간디서원.
- 폴 틸리히(Paul Tillich)/성신형 역(2017), 『사랑 힘 그리고 정의』, 한들출판사.
- 하워드 제어(Howard Zehr)/손진 역(2012),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KAP.
- 허 영(1995), 『한국헌법론』, 박영사.
- Will Kymlicka/장동진 외 3인 역(2018),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Abstract

Fairness and Justice
- Comparison between the Bible and Philosophy -

Kim, Jaeseu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Professor of Law)

This paper compared and analyzed the study of both philosophy and the Bible related to fairness and just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helpful information to lay readers who are interested in justice and fairness in philosophy and the Bible.

First of all, this paper analyzed and clarified the meaning of justice, fairness, and righteousness in legal philosophy, political philosophy, and the Bible. As a result, this paper concluded that justice comprises the meaning of the foregoing three terms.

Next, the concept of justice in philosophy was summarized, and the perspective and classification of justice in political philosophy and legal philosophy was summarized. Thereafter, organized and introduced Aristotle and John Rawls' theory of justice.

Then, this paper reviewed and analyzed the theory of justice in the Bible. Specifically, clarified the concept of justice in the Bible by analyzing the usage of the two original words mishpat and tsedaqah related to the justice of the Old Testament. This paper also confirmed that although the New Testament rarely uses the term justice, the original language corresponding to justice is found and describes justice practically in many parts.

And based on the foregoing results, how the biblical justice is specifically applied to the Bible wa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retributive justice, distributive justice, and restorative justice. In summary, biblical justice is based on retributive justice, but it also emphasizes distributive justice. However, the justice that the Bible aims for ultimately is restorative justice.

Finally, this paper compared and analyzed the justice of philosophy and the Bible.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biblical justice and philosophical justice is that the justice of the Bible originated from divine law; on the other hand, philosophical justice come from human reasoning. However,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the concept of justice in Philosophy, except for that of justice of libertarians, can be in line with the Bible, especially in distributive justice and restorative justice.

Key words : Fairness, Justice, Distributive Justice, Biblical Justice, Rawls